

#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관련 요인

## 장 덕 기\*

Key words: 구조개혁특구(Special Zone of Structural Renovation), 사회경제적 효과(Socio-Economic effect), 환경보전형 농업특구(Special Zone of Sustainable Agriculture),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find out impact factors through regional social-economic effects by agricultural special zone of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ype through its designation for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and to suggest implications of this policy overall.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impacts of the agricultural special zone upon social-economic effects.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improvements of living environment (factor 1), creation of special zone foundation (factor 2), income improvement (factor 3),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griculture (factor 4). Accumulated dispersion of these four factors was 78.7%.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factors to analyze the impacts of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factor 4 was turned out to be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ors and all factor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regional social-economic impacts, factor 3 was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all factor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 1. 서론
- 2. 선행연구와 분석 방법
- 3.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내용
- 4. 분석결과 및 해석
- 5. 결론

## 1. 서론

일본정부가 지역의 자발성으로 진전이 늦은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

결정 하에서 구조개혁특구제도(이하 특구라 한다)를 도입한지 4년여가 경과했다.<sup>1</sup>

<sup>1</sup> 한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유사점은 추진배경이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자립화에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규제개혁방식, 규제개혁주도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차이점은 특구사업전개에 있어서 한국은 특정지역 지자체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면이 있으나 일본은 특정지역 및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즉 규제특례의 전국화를 시

\*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이 제도는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특례를 도입하는 특정의 구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서의 구조개혁을 실시함으로써 특정지역의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를 전국적으로 과급시켜 국가 전체의 경제 활성화와 또 하나는 지역특성을 현재화하여 그 특성에 따른 산업의 집적이나 신규산업의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특구제도는 규제개혁의 실험장이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겠다. 일본 정부로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에 대한 시급한 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그 동안 규제개혁이 늦어진 분야에 구조개혁특구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적인 입안을 중요시 한 것이다. 이전의 규제가 전국 일률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규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사례를 한 지역에 한정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래의 지역 활성화 시책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특구는 지방공공단체의 주도로 개별사업은 지방공공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추어

선행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해당 지역만이 갖는 자연적, 역사적인 면 등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규제의 특례조치 도입이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일본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없이 자체조달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설령 특구효과가 인정되어 전국적으로 과급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계점 또한 없지 않다.

그러므로 특구제도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구의 규제개혁의 선행실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목적에서 볼 때 현지점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통해 특구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특구 본연의 취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 12월 현재, 지정된 특구 중 농업관련분야 가운데 일본 농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과 관련된 환경보전형 농업특구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sup>2</sup>

도한다는 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음. 이런 점에서 한국의 특구는 지정건수가 소수에 그치고 지자체의 의욕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화나 민간업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sup>2</sup> 2005년 12월 현재, 분야별 누계건수를 보면 13 분야 498건(총 709건 중 211건이 전국화 되어 전국화율은 29.8%)임. 농업관련분야는 현재 16건

2005년부터 전국적인 전개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특구 내 친환경 수도작농가를 중심으로 특구지정 지역 및 지역농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그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와 분석 방법

### 2.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한·일 선행연구를 보면, 국내에서는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농업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이 분야 연구논의의 기초로 볼 수 있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과제”(김정호 2004). 일본의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의 특징과 추진실태, 과급효과를 분석한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일본 지역특구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일 지역특구법 및 규제특례조치의 비교분석”,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추진현황과 특징”(이홍배 2004; 2005), “한·일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지정과 친환경 수도작 농가의 의식·대응에 관한 비교연구”(장덕기 2005), 한·일 환경보전형 농

업특구 내 주 소득작목인 친환경 수도작 농가들의 행태에 관한 비교를 통해 한국의 환경보전형 농업특구 및 특구 내 환경보전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한·일 환경보전형 농업특구 내 수도작 농가의 행태분석”(장덕기, 박준근 2005)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특구의 규제특례조치에 대한 평가의 개요나 과제, 전국 전개의 개요와 과제를 고찰한 “構造改革特区における評価システムの課題”(21世紀政策研究所 2004), 특구제도를 통한 지자체의 의식개혁, 민간사업자의 참여에 관한 시점, 특구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고찰한 “構造改革特区の現状と今後の課題”(21世紀政策研究所 2004)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전체 특구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현황, 추진실태, 시사점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역특구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환경보전형 농업이 한·일 농정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환경보전형 농업특구를 사례로 지역의 중심농가에 대한 양케이트조사를 실시하여 특구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2. 분석 방법

설문지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환경보전형 농업특구 지정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특구지정만족도 및 견해(20문항), 인구통계학적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제까지 총 101건이 인정되어 85건이 전국화 되어 전국화율은 84.2%로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전 분야 전국화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3%로 농업관련분야가 구조개혁특구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설문지조사는 2005. 7. 30~8. 2에 실시하였으며, 표본은 일본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인 효고현(兵庫縣) 이치지마정(市島町)친환경 수도작 농가 547호 중에서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 주체인 비영리법인 「이치지마 단바타로(市島丹波太郎)」에 소속된 100여 농가 중에서 51농가에 대하여 면접방식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비영리활동법인 「이치지마 단바타로(市島丹波太郎)」가 町(정)과 일치되어 지역농업의 근본인 『유기의 지역 이치지마』 확립을 추구하는 단체이자 핵심농가라는 점에서 특구지정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가장 적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각 요인들의 신뢰성분석,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영주연령, 영농경력, 친환경 수도작 경력, 친환경 수도작면적, 친환경 수도작 재배단계별로 요인점수 평균값을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요인별지각도를 도출하여 더욱 더 명확하게 인구통계학적특성별 요인별 관계를 분석하였다.

### 3.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내용

#### 3.1. 구조개혁특구 추진의 의의 및 목표

일본 정부는 경제의 활성화를 규제개혁의 실시를 통해, 민간 활력을 최대한으로

살린다는 차원에서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를 중요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규제 개혁을 통한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국적인 규제개혁의 실시는, 여러 사정에 의해 진전이 늦은 분야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공공단체나 민간 사업자등의 자발적인 입안에 의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의 특례를 도입하는 특정의 구역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자발성을 발휘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이 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의의라 하겠다.

지역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전에 어떠한 모델을 제시한다거나 이전의 재정조치에 의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와 자립의 정신』을 모체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입안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사업자는 특구 도입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특구구상의 입안이 요구되는데 크게 2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첫째로, 특정의 지역에 있어서 구조개혁의 성공 사례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한 평가를 통해, 전국적인 구조개혁으로 파급시켜, 일본 전체의 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한다는 점.

둘째로, 지역의 특성을 현재화하여, 그 특성에 맞는 산업의 집적이나 신규 산업의 창출, 소비자·수요자 이익의 증진 등에 의해, 지역의 활성화에의 연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구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규제는 전국이 일률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인식전환을 통해 지역의 실태에 적합한 규제개혁으로 『관으로부터 지역주민에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라는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보겠다. 즉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역할은 물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특구 추진의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sup>3</sup>

### 3.2.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와 법인 『이치지마 단바타로』

#### 이치지마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의 의의와 목표

이치지마정(市島町)은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인간이 공생하는 편안한 지역을 목표로 정(町)전체가 『유기지역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진하고 정(町)이 퇴비센터를 운영하여 토양 만들기를 기본으로 농업을 전개하고 있다.<sup>4</sup> 또한 유기농업 등을 목표로 하는 신규취농자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시 사업으로는 NPO법인이 신규 취농희망자의 실습·연수농장 및

환경보전형 농업 기술시범농장 등으로서 농지의 권리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5</sup>

신규 취농희망자가 원활히 취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PO 법인 『이치지마 단바타로(市島丹波太郎)』 스스로가 연수농장 등을 마련하여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을 위해, 시범농장이나 재배 기술 연구 농장 등을 설치해,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증, 보급 추진, 확대 개발을 통해 『유기의 지역 이치지마』의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보면 신규 취농자의 육성 및 환경보전형 농업의 견인역으로서의 NPO 법인 『이치지마 단바타로(市島丹波太郎)』가 신규 취농 희망자의 수용지원 체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취농상담업무를 비롯해 수용농가로서의 취농 연수희망자의 재배지도, 취농지도, 조언뿐만 아니라 지역 밀착형 상담역이나 조언자로서 신규 취농 희망자와 지역이 융화할 수 있도록 중개 및 추진역이 되어 원활한 취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PO 법인 『이치지마 단바타로(市島丹波太郎)』의 선도적·실천적 생산자 등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에 의한 생물생태계 조사를 비롯해 환경보전형 농업의 재배기술의 확립을 도모하는 등 지역전체의 『유기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sup>6</sup>

<sup>3</sup> 構造改革特別區域推進本部, 『構造改革特別區域基本方針』, 2004.

<sup>4</sup> 효고현(兵庫縣)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7,715ha이고, 임야면적 5,463ha, 농지면적 1,319ha, 택지면적 199ha, 기타 734ha로 자연풍부한 중산간지역으로 특구대상지역은 이치지마 전 지역으로 경지면적은 1,250ha임. 전체인구는 2004년 4월 현재, 10,531명이고, 세대수는 3,324호, 65세 이상 인구가 25.6%로 고령화가 심각하며 아울러 농업후계자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또한, 유기지역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수는 현(縣) 평균 28%보다 훨씬 많은 55%에 이른다.

<sup>5</sup> 신규취농자 육성지원조성금이라는 정(町)단독의 조성제도로 45세 이하의 신규취농희망자를 위한 지원조성금으로 주3~4일 정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수를 하며 연수비용은 정(町)에서 월 10만 엔씩을 지급하고 있음. 그 외에 농지임차료나 1년 이내 정내(町内)에 취농시킨 농가 등에 대해서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음.

<sup>6</sup> 市島町 『構造改革特別區域計劃』, 2004.

## 비영리활동법인 이치지마 단바타로

이 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활동, 지역 만들기 추진활동, 특정 비영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원조활동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산품의 판매, 이용기회조성, 물류 촉진사업, 유기농업보급개발 및 추진사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町)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① 환경보전형 농업의 후계자 및 농업자 확보를 위한 신규 취농희망자의 상담, 조언, 지도와 관련되는 업무, ② 안심·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는 정(町)자체의 제도에 근거한 작목별 재배 기준(안심·안전 브랜드)의 작성, 재배지도 및 인정 등의 업무, ③ 이용하지 않고 있는 유기질 자재의 퇴비화 및 재배 실증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주요한 추진내용을 보면 유기야채 등의 직판관을 위해 이치지마 단바타로(市島丹波太郎)의 설립, 관리, 운영, 그리고 정으로부터 임대한 건물에 직매장을 개장하여 무농약, 감농약재배 등의 신선한 야채·절임류 등의 농산가공품, 목공품 등 이치지마정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sup>7</sup> 그리고 이치지마

<sup>7</sup> 정취조사에 의하면 이곳에서 판매되는 품목수는 약 70~80종류로 1개월 매출액은 약 200만 엔 정도로 수수료는 20%, 농가수취가격은 80%정도로 나타남. 가격결정은 농가가 결정하고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택배편으로 계절야채(유기야채·특별재배야채)를 도시용으로 택배. 또 주1회, 트럭판매(産直)도 실시, 학교급식용 야채의 공급을 함으로서 생산자의 소득증대나 생의 보람 창출, 지산지소 등에 의한 소비자에게 안심·안전농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생에 대한 식농교육을 담당하는 등 지역의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역농업의 근간인 『유기의 지역 이치지마』 확립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농가와 농업경영자의 육성 확보 및 지역환경을 지키고 농지를 유효하게 활용해 지속가능한 식료·농업·농촌의 구축을 지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8</sup>

## 4. 분석결과 및 해석

### 4.1. 조사농가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농가의 연령대별 구성은 60세 이상의 농가가 64.7%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영농경력은 40년 이상이 52.9%를 상회하고 있으며, 10년 미만인 경

<sup>8</sup> 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에 의해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구성원은 이치지마정 주민을 주체로 하는 법인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진하는 활동을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하는 NPO법인으로 신규 취농희망자(환경보전형 농업 연수생)지원을 위한 실습·연수용농장,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의 연구·실증 등의 모델농장으로서 입차에 의한 농지의 권리취득을 할 수 있도록 특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또한 신규 취농희망자에 대한 취농상담은 주 평균 한 조 정도로 직 매장 2층 간이숙박소에서 신규취농자와 연수생이 체재하면서 정내(町内)에서 농작업을 행함.

표 1. 조사농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 성	변수	빈도	비율(%)
경영주 연령 (세)	40세 미만	5	9.8
	40~49	5	9.8
	50~59	8	15.7
	60세 이상	33	64.7
영농경력 (년)	10년 미만	9	17.6
	10~19	6	11.8
	20~29	3	5.9
	30~39	6	11.8
	40년 이상	27	52.9
친환경 수도작 경력(년)	5년 미만	6	11.8
	5~9	3	5.9
	10~19	11	21.6
	20~29	5	9.8
	30년 이상	26	51.0
친환경 수도작 면적(평)	1000평 미만	20	39.2
	1000~1999	14	27.5
	2000~2999	9	17.6
	3000평 이상	8	15.7
친환경 수도작 재배단계	유기재배	10	19.6
	무농약·무화학비료재배	14	27.5
	무화학비료·감농약재배	9	17.6
	감농약·감화학비료재배	18	35.3
총 계		51	100.0

우는 17.6% 정도로 영농후계자의 부재, 고령화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친환경 수도작 경력은 30년 이상이 51% 정도, 5년 미만은 11.8% 정도로 특구지정 훨씬 이전부터 대다수 농가가 친환경 수도작을 실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수도작 면적을 보면 1,000평 미만 39.2%, 1,000~1,999평 27.5%, 2,000평 미만이 70% 가깝게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수도작 재배단계별로는 감(減)농약·감(減)화학비료 재배가 35.3%로 가장 많으나 유기재배나 무농약·무화학비료 재배도 각각 20%, 2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 4.2.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요인

특구지정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 순으로는 환경보전형 농업 확대(37.3%), 친환경농산물 판매 증대(33.3%), 도농교류 확대(25.5%), 관민협조, 지역특화발전, 환경보전형 농업후계자 육성, 농촌관광활성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농외소득 증대(82.3%), 주민복지 증진(74.5%), 문화수준 향상(68.6%), 주민교육 향상, 자립

표 2.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요인

문항	농가 수(%)			평균	표준편차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주민복지증진	38(74.5)	12(23.5)	1(2.0)	2.18	0.713
문화수준향상	35(68.6)	10(19.6)	6(11.8)	2.29	0.923
주민교육향상	29(56.8)	16(31.4)	6(11.8)	2.53	0.809
자립자족기여	29(56.8)	19(37.3)	3(5.9)	2.47	0.644
농가소득증대	25(49.0)	21(41.2)	5(9.8)	2.53	0.784
농업소득증대	26(50.9)	21(41.2)	4(7.8)	2.49	0.758
농외소득증대	42(82.3)	9(17.6)	0	1.98	0.616
농촌관광활성화	19(37.2)	21(41.2)	11(21.6)	2.82	0.865
도농교류확대	14(27.5)	24(47.1)	13(25.5)	3.02	0.883
친환경농산물판매증대	7(13.7)	27(52.9)	17(33.3)	3.20	0.664
환경보전형 농업확대	5(9.8)	27(52.9)	19(37.3)	3.27	0.635
환경보전형 농업후계자육성	17(33.3)	22(43.1)	12(23.5)	2.90	0.900
생산·유통이력추적시스템도입	24(47.0)	20(39.2)	7(13.8)	2.65	0.820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도입	25(49.0)	21(41.2)	5(9.8)	2.57	0.728
관민협조	6(11.8)	32(62.7)	13(25.5)	2.53	0.674
지역특화발전	20(39.2)	18(35.3)	13(25.5)	2.88	0.840
규제특례조치	24(47.1)	19(37.3)	8(15.7)	2.69	0.735
				2.65	0.764

자족에 기여 각각 56.8%, 농업소득 증대 50.9%, 농가소득 증대,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도입이 각각 49.0% 등으로 나타났다. 17문항 평균치 2.65점(5점 척도)보다 높게 나타난 항목으로는 환경보전형 농업확대(3.27), 친환경농산물판매 증대(3.20), 도농교류 확대(3.02), 환경보전형 농업후계자 육성(2.90), 지역특화 발전(2.88), 농촌관광 활성화(2.82), 규제특례 조치, 생산·유통이력추적시스템 도입으로 나타난 반면,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난 항목으로는 농외소득증대(1.98), 농촌복지 증진(2.18), 문화수준 향상(2.29), 자립자족에 기여(2.47), 농업소득 증대(2.49), 농가소득 증대(2.53), 농촌교육 향상, 관민협조,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도입으로 나타났다<표 2>.

이상의 농가들의 의식을 종합해 보면, 환

경보전형 농업의 확대나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관민협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은 반면, 그 외 모든 문항에서 부정적인 인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형 농업특구 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안심·안전성을 어필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입이나 생산·유통 이력추적 시스템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0%에 가까운 응답을 보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판매처가 확보되어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인증 등을 받지 않아도 판매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4.3. 사회경제에 미치는 요인 분석

설문 20문항 중 사회경제적 효과는 회귀 분석 종속변수로 이용하고, 생활환경개선 변수는 공통성이 0.4수준으로 그 외 다른 변수에 비해 너무 낮아 분석에는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농업활성화 변수는 회귀분석 시 종속변수로 이용하고자 조사하였으나 본 논문테마를 사회경제적 효과로 한정하였기에 이상 3문항을 제외한 17문항으로 특구 지정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방식으로는 요인사이의 상관관을 허용하지 않아 문항들의 요인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요인해석을 단순화한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법을 이용하였다. 아이겐 값(Eigen Value)은 1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요인을 4가지 선정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은 0.4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본적합도(Kaiser Meyer Olkin)값이 0.792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바르렛(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지정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의 변수들 사이에 공통적인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문화수준 향상, 주민복지 증진, 자립자족에 기여, 관민협조, 주민교육 향상 5개 항목을 요인 1(생활환경개선 호

과), 생산·유통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도입, 환경보전형 농업후계자 육성, 규제특례 조치, 지역특화 발전 5개 항목을 요인 2(특구기반조성 효과), 농업소득증대, 농가소득증대, 농외소득증대 3개 항목을 요인 3(소득향상 효과), 친환경농산물판매 증대, 환경보전형 농업확대, 도농교류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4개 항목을 요인 4(환경보전형 농업효과)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들 각 요인의 설명력은 전체분산의 30.0%, 18.7%, 16.0%, 14.0%로 누적분산율은 78.7%이므로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뢰성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17문항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측정한 결과 0.936으로 나타났고 각 요인별 분석결과는 0.864~0.905로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3>.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개의 요인 모두 유의한 의미를 지니므로 모두 포함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 $\hat{Y}$ )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hat{Y} = 2.725 + 0.202(\text{요인 1}) + 0.313(\text{요인 2}) + 0.368(\text{요인 3}) + 0.182(\text{요인 4})$$

모든 회귀계수들은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검정 결과는 20.086으로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준화계수를 보면 4개 독립변수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요인 3(0.530), 요인

표 3.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요인 변수	요인 1 생활환경 개선 효과	요인 2 특구기반 조성 효과	요인 3 소득향상 효과	요인 4 환경보전형 농업 효과
문화 수준 향상	0.904			
주민 복지 증진	0.803			
자립자족 기여	0.787			
관민 협조	0.743			
주민 교육 향상	0.729			
생산·유통이력 추적 시스템 도입		0.917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도입		0.758		
환경보전형 농업후계자 육성		0.691		
규제특례조치		0.635		
지역 특화 발전		0.592		
농업소득 증대			0.912	
농가소득 증대			0.905	
농외소득 증대			0.623	
친환경농산물판매 증대				0.834
환경보전형 농업 확대				0.721
도농 교류 확대				0.559
농촌관광 활성화				0.458
크론바하 알파 값	0.905	0.872	0.894	0.864
초기 고윳값	5.099	3.176	2.717	2.380
설명 분산(%)	29.997	18.682	15.984	14.002
누적 분산(%)	29.997	48.679	64.664	78.666

표 4.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725	0.061		44.513	0.000
요인 1(생활환경개선효과)	0.202	0.062	0.290	3.263	0.002**
요인 2(특구기반조성효과)	0.313	0.062	0.450	5.056	0.000***
요인 3(소득향상효과)	0.368	0.062	0.530	5.954	0.000***
요인 4(환경보전형 농업효과)	0.182	0.062	0.262	2.946	0.005**

\*\*p<0.05 \*\*\*p<0.001  
R 2 = 0.636 Adjust R 2 = 0.604

2(0.450), 요인 1(0.290), 요인 4(0.262) 순으로 4개의 요인 모두 정(正)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4개 요인은 종속변인인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체 변량의 60%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모형에 대한 잔

차분석을 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4.4. 요인점수 평균에 의한 비교분석 및 요인별 지각도

다음은 경영주연령, 영농경력, 친환경 수도작 경력, 친환경 수도작면적, 친환경 수

그림 1. 경영주 연령의 요인별 지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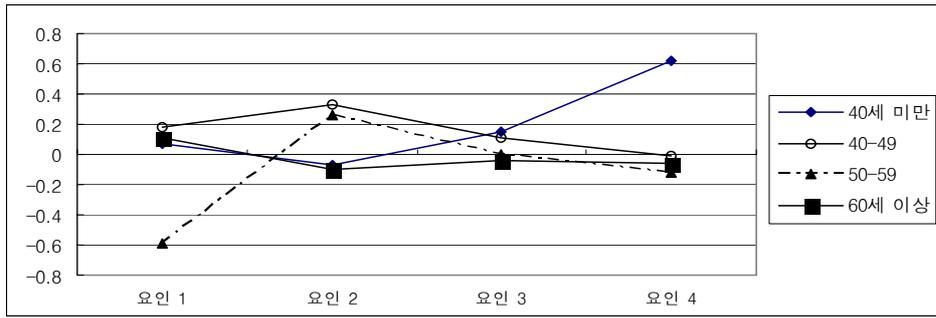


표 5. 경영주 연령별 요인점수 평균비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40세 미만	0.0682	-0.0697	0.1499	0.6183
40~49세	0.1764	0.3328	0.1123	-0.0116
50~59세	-0.5915	0.2563	0.0021	-0.1242
60세 이상	0.1063	-0.1020	-0.0402	-0.1618

도작 재배단계별로 요인점수 평균값을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농가의 지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별지각도를 도출하였다.

**경영주 연령별 요인점수 평균 및 요인별 지각도**

<표 5>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영주 연령별 요인점수 평균치를 보면, 40세 미만은 요인 2에 대해 마이너스 지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외의 요인에는 모두 플러스 지각을 하고 있다. 40~49세는 요인 4는 다소 부정적인 지각이 강함을 알 수 있으며 50~59세는 요인 1과 요인 4,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요인 1이외의 요인 2, 3, 4에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별 지각도를 보면 요인 1은 50~59세가 가장 부정적인 지각이 강하고 다른 연령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3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요인점수가 작아져 가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향상효과에 대한 지각이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60세 이상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4는 40세 미만이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으나 40세 이상 연령대는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으며 차이 또한 큼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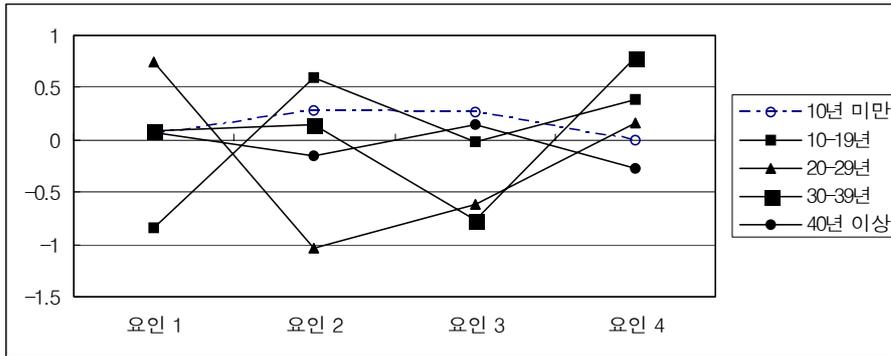
**영농경력별 요인점수 평균 및 요인별 지각도**

<표 6>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농경력 10년 미만은 요인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요인에 대해 지각차가 크지 않고 비슷한

표 6. 영농경력별 요인점수 평균비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10년 미만	0.0594	0.2817	0.2720	0.0031
10~19년	-0.8415	0.6029	-0.0137	0.3820
20~29년	0.7427	-1.0368	-0.6134	0.1567
30~39년	0.0799	0.1501	-0.7691	0.7918
40년 이상	0.0669	-0.1460	0.1514	-0.2793

그림 2. 영농경력의 요인별 지각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10~19년, 20~29년의 경우는 요인별 지각차 변화가 다소 심함을 알 수 있으며, 40년 이상은 요인 1과 요인 3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 요인 2나 요인 4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지각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요인 1은 20~29년이 가장 높은 지각을 보인 반면, 10~19년이 가장 낮은 지각을 하고 있다. 요인 2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요인에 비해 지각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10년 미만이 가장 높고, 요인 4는 30~39년이 가장 긍정적으로 이미 1975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수도작 실천으로 약 30년 영농경력 농가들의 지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40년 이상에서는 부정적인 지각

을 보이거나 40년 미만에서는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친환경 수도작 경력별 요인점수 평균 및 요인별 지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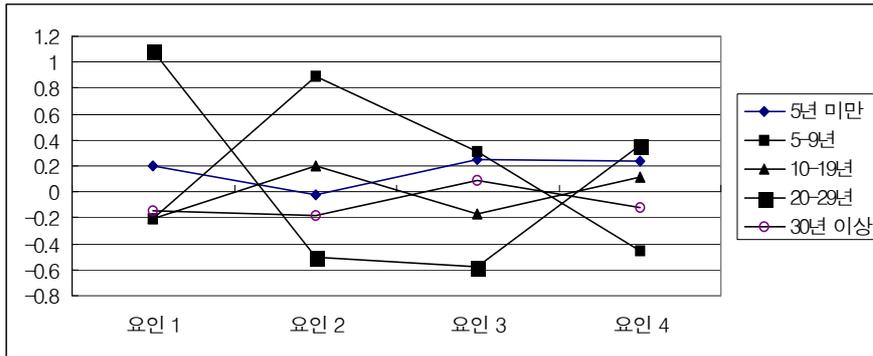
<표 7>과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5년 미만의 농가들이 요인 1, 3, 4에서 긍정적인 지각을 보인 반면, 경력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지각이 다소 많아짐을 알 수 있다. 30년 이상에서는 요인 3 이외에는 부정적인 지각이 두드러져 친환경 수도작 경력이 많을수록 다소 부정적인 지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5년 미만, 30년 이상에서는 요인별 지각차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요인 1, 2에서 지각차가

표 7. 친환경 수도작 경력별 요인점수 평균비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5년 미만	0.1942	-0.0230	0.2531	0.2314
5~9년	-0.2102	0.8911	0.3099	-0.4535
10~19년	-0.2128	0.1941	-0.1668	0.1132
20~29년	1.0926	-0.5025	-0.5780	0.3622
30년 이상	-0.1407	-0.1830	0.0876	-0.1186

그림 3. 친환경 수도작 경력의 요인별 지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인 1은 20~29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 2는 5년 미만에서 높게 나타나 전체적인 요인에서도 지각차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에서는 10년 미만의 농가가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으며, 요인 4에서는 20~29년의 경력자들이 가장 긍정적인 지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 수도작 면적별 평균 및 요인별 지각도**

<표 8>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0평 미만의 농가들이 더 긍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면적이 큰 농가일수록 부정적인 지각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2999평에서는 요인 1에서 가장 긍정적인 지각이 두드러지고

지각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0평 이상은 모든 요인에서 부정적인 지각을 나타내고 있어 친환경 수도작 면적이 많음에도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지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요인 1은 2000~2999평 이외에서는 부정적인 지각이 강하게 나타나며, 그 밖의 요인에서도 각각 절반 정도씩 긍정적인 지각과 부정적인 지각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에서는 2000~2999평 농가가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각 면적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 외 요인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괴리차를 볼 수 있다. 요인 4를 보면 2000평 이상에서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수도작 재배면적이 클수록 환경보전형

표 8. 친환경 수도작 면적별 요인점수 평균비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1000평 미만	-0.1558	0.1385	0.0415	0.0243
1000~1999평	-0.0400	-0.2170	0.0898	0.1581
2000~2999평	0.5196	0.1833	-0.1831	-0.1005
3000평 이상	-0.1250	-0.1725	-0.0549	-0.2243

그림 4. 친환경 수도작 면적의 요인별 지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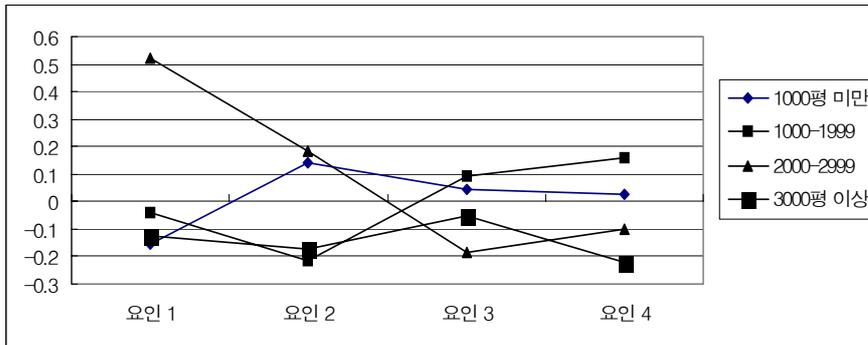


표 9. 재배단계별 요인점수 평균비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유기재배	-0.0733	0.0236	0.2021	0.4806
무농약·무화학	-0.1581	0.2392	-0.1117	-0.0924
무화학비료·감농약	0.4035	0.1070	0.3329	-0.0860
감농약·감화학비료	-0.0380	-0.2527	-0.1918	-0.1521

농업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배단계별 평균 및 요인별 지각도**

<표 9>와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기재배 농가와 무화학비료·감농약 재배농가들에게 긍정적인 지각이 많은 반면, 무농약·무화학비료 재배 특히, 감농약·감화학비료재배 농가는 모든 요인에서 부정적인 지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요인 1에서는 무화학비료·감농약 재배에서 긍정적인 지각인 반면, 그

이외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요인 2에서는 감농약·감화학비료 재배를 제외한 모든 재배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반면, 요인 4에서는 유기재배 이외에는 모든 재배단계에서 부정적인 지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 3에서는 무화학비료·감농약 재배가 가장 긍정적인 지각을 보이며, 요인 2는 무농약·무화학비료 재배, 요인 4는 유기재배에서만 긍정적인 지각을 나타내고, 그 밖의 요인에서는 부정적인 지각이 강하게 나타나 재배 단계별 괴리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5. 친환경 수도작 재배단계의 요인별 지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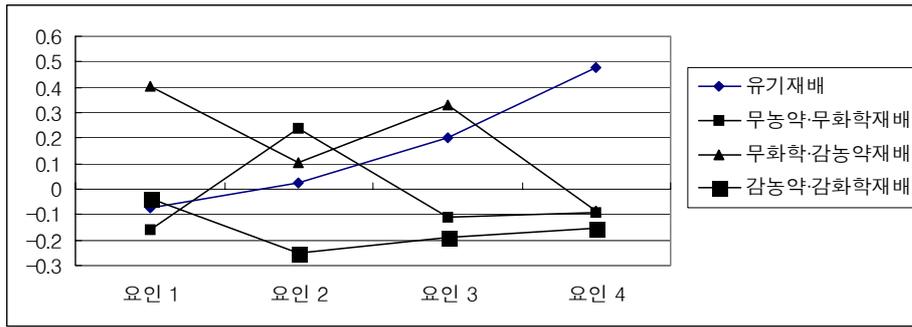


표 1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요인별 종합

	요인점수평균(+)	요인점수평균(-)
경영주 연령	· 주로 50세 미만	· 주로 60세 이상
영농경력	· 주로 10년 미만, 30~39년이 많음	· 그외 연령대는 비슷한 수준임
친환경 수도작경력	· 5년 미만(요인 2 제외)	· 30년 이상(요인 2 제외)
친환경 수도작 면적	· 1000평 미만(요인 1 제외)	· 3000평 이상 농가
재배단계	· 유기재배(요인 1 제외)	· 감농약·감화학비료재배

4.5. 비교 종합

이상의 4개의 요인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분향의 평균비교와 요인별지각도 도출을 통해 종합해 보면 <표 10>과 같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주로 50세 미만에서 긍정적인 지각, 주로60세 이상에서 부정적인 지각을 보이며, 영농경력에서는 주로 10년 미만과 30~39년 층이 긍정적인 지각, 그 외 연령 층은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수도작 경력에서는 주로 5년 미만이 긍정적 지각을 보이며, 주로 30년 이상이 부정적인 지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수도작 면적에서는 주로 1000평 미만이 긍정적 지각을 그리고 3000평 이상이 부정적 지각으로 나타났다, 재배단계별로 보면 주로 유기재배 단계에서 긍정적 지각, 감농약·감화학비

료재배 단계에서 부정적 지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환경보전형 농업특구 지정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그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보전형 농업 특구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환경보전형 농업특구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1(생활환경개선 효과), 요인 2(특구기반조성 효과), 요인 3(소득향상효과), 요인 4(환경보전형 농업효과)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들 각 요인의 설명력은 전체분산의 30.0%, 18.7%, 16.0%, 14.0%로 누적분산율은 78.7%로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

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성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17문항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측정 한 결과 0.936으로 나타났고 각 요인별 분석결과는 0.864~0.905로 내적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4가지 요인이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요인 3(0.530), 요인 2(0.450), 요인 1(0.290), 요인 4(0.262) 순으로 4개의 요인 모두 정(正)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4개의 요인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평균비교를 통해 종합해 보면, 경영주 연령별로는 주로 50세 미만에서 긍정적 지각, 주로 60세 이상에서 부정적 지각, 영농경력에서는 주로 10년 미만과 30~39년이 긍정적 지각, 그 외 연령층은 긍정적 지각과 부정적 지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수도작 경력에서는 주로 5년 미만이 긍정적 지각, 주로 30년 이상이 부정적 지각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수도작 면적에서는 주로 1000평 미만이 긍정적 지각, 3000평 이상이 부정적 지각으로 나타났으며, 재배단계를 보면 주로 유기재배단계에서 긍정적 지각, 감농약·감화학비료 재배 단계에서 부정적 지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임에도 요인 분석 결과, 4개의 요인 중 그 영향력을 보면 환경보전형 농업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농가들로서는 환경보전형 농업이

특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보전형 농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농외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응답이 전무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형 농업과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으로의 연계를 통한 생산, 가공, 유통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복합적인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로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특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촌마케팅이 필요하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이나 생산·유통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부정적인 응답이 50%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금후 소비자들의 안심·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안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최저기준이자 신뢰관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척도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경제적인 효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17문항 중 환경보전형 농업확대, 친환경농산물판매확대, 도농 교류 이외에는 평균(5점척도 3점)이하로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요인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배단계별로 보면 환경보전형 농업효과에 있어서 유기재배와 그 외 재배단계의 지각차가 뚜렷함으로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의 주체인 농가들의 지각차를 좁힐 수 있도록 유기재배로의 전환이 좀 더 적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본특구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 환경보전형 농업 특구에 대하여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점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만을 근거로 한국 환경보전형 농업 특구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지정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일본의 특구와 같이 환경보전형 농업후계자 확보와 육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환경보전형 농업특구 시책에 있어서 비 중심 단일작목에서 탈피하여 품목의 다양화, 그리고 주작목인 쌀의 경우 유기재배농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유기재배 단계로 이행될 수 있는 생산 및 판매·유통에 있어서 생산자, 지자체의 일체화된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며, 셋째,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안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노하우를 축적시켜가는 실천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책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김정호 등. 2005.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2005. “지역농업의 현실과 비전.” 『농업전망 20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31(3): 514-534.  
 김창길 외 7인. 2004. 『환경보전형 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 연구보고서R4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2004.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연구』.  
 재정경제부. 2003.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설명회 자료』.  
 이홍배. 2005.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추진 현황과 특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4b. 『한·일 지역특구법 및 규제특례 조치의 비교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4a. 『일본 지역특구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덕기. 2005. “한·일 환경보전형 농업특구지정과 친환경 수도작 농가의 의식·대응에 관한 비교연구.” 『농촌사회』 15(2): 7-45.  
 \_\_\_\_\_. 박준근. 2005. “한·일 환경보전형 농업특구 내 수도작 농가의 행태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2(3): 475-494.  
 構造改革特別區域推進本部. [http:// www.kantei.go.jp/jp/singi/kouzou2/](http://www.kantei.go.jp/jp/singi/kouzou2/)  
 \_\_\_\_\_. 2004. 『構造改革特別區域基本方針』.  
 兵庫縣農林統計協會. 2004. 『丹有の農林業』.  
 21世紀政策研究所. 2004. 『構造改革特區制度における評価システムの課題』.  
 \_\_\_\_\_. 2004. 『構造改革特區の現況と今後の課題』.  
 市島町. 2004. 『構造改革特別區域計劃の變更の認定申請書』.  
 \_\_\_\_\_. 2004. 『構造改革特別區域計劃』.  
 \_\_\_\_\_. 2003. 『有機の里いちじま』.

■ 원고 접수일 : 2005년 12월 7일  
 원고 심사일 : 2005년 12월 12일  
 심사 완료일 : 2006년 2월 20일